

1. 개정이유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 통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연금 급여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통지에 따른 국민연금 연초 통지방법 변경(안 제22조)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나. 상속권 상실 사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정비(안 제52조)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해 유족연금등 수급권자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어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규정 정비

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용계좌 한도 변경, 185만원→250만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를 “(수급권자 내용변경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중 “내용변경”을 “내용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단, 공단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6. 26.>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 변경내역 수신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주소(e-mail)	[] 우편
----------------------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	[] 종사	[] 비종사	월평균 소득금액	원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에 표시
	①				
	②				
	③				
	④				

추가 가입기간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 /)	② (/ /)	③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안내 확인

본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6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될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 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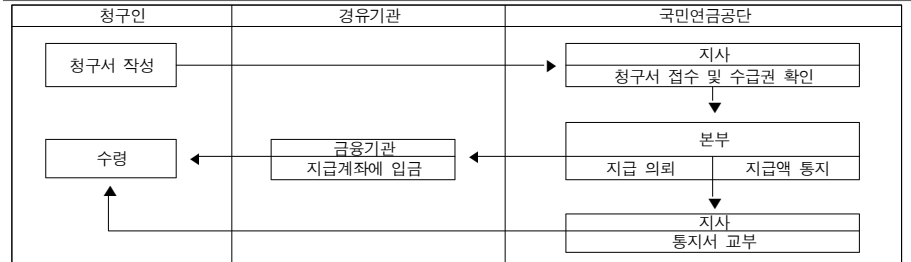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소득 있는 업무”란의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청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분할연금 수급권자 (신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노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효기간

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 신청구	[] 있음 [] 없음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 /)	② (/ /)	③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신청구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신청구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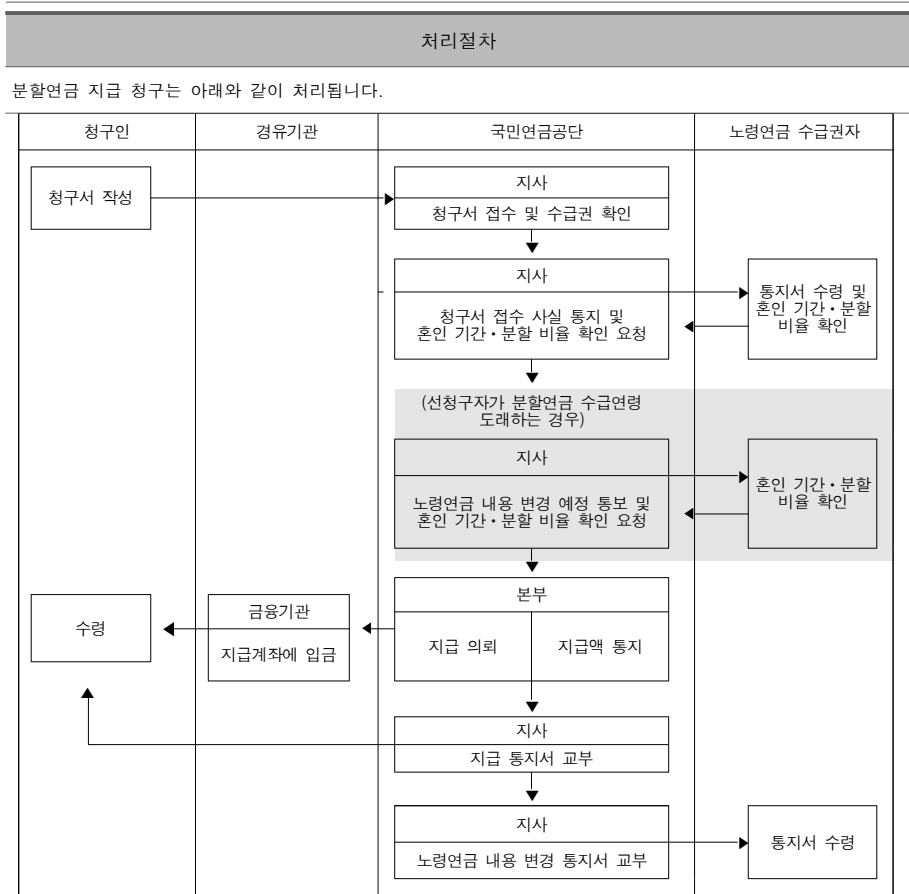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분할연금 신청구제도 :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50으로 균등하여 나누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자(신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 "혼인 유효기간"란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적습니다.
-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신청구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신청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수급권자(신청구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 분할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배우자였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혼인 기간 중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사유 :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	---

분할 비율 별도결정	유형	[] 당사자 간 합의 [] 재판		
	별도결정일	년 월 일		
	비율	합계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수급권자
		100%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신고인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대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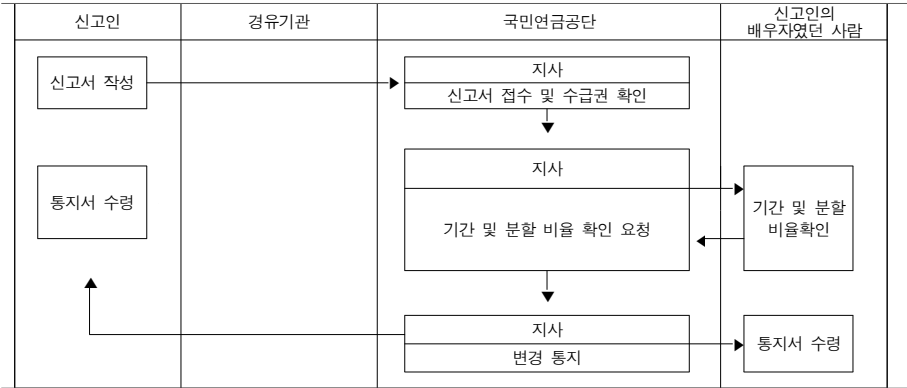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신고서는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 청구서 제출 후에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결정되거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서식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분할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3.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4. "배우자였던 사람"이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5.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6. "혼인 유지기간"란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을 적습니다.
 7. 합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신청구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신청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비대상	재해보상금 여부	수령	[] 수령 [] 미수령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없음	손해보상금 여부	수령	[] 수령 [] 미수령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 계	※ 장애 표시
	①				
	②				
	③				
	④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 /)	② (/ /)	③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권자와의 관계	
	수급권자 확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질병·부상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 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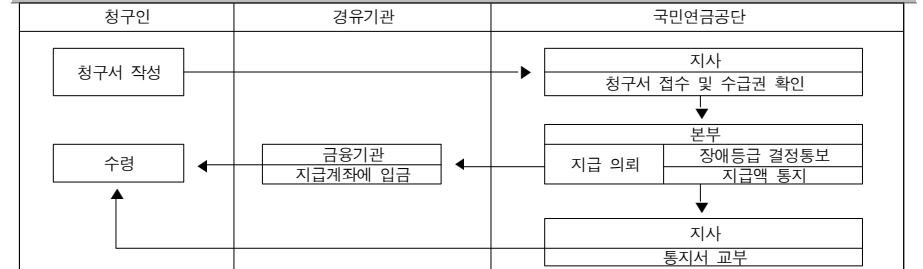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내용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열람 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2. 수집·이용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심사자료 열람(활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2.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공통	1.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보유근거: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외국연급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청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본인이 하며, 본인이 사망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 중에 발생하는 장애의 악화 또는 호전,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단독 ☐ 동순위자(명)		대표자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양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의 양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일평균소득인 월 250만원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와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조점사항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수급사유	※ 미지급급여	[] 해당 [] 미해당	※ 사망일시금	[] 해당 [] 미해당	※ 초진일
--------	---------	-------------------	---------	-------------------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①				
	②				
	③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민법 제1004조의2에 []없음 []소송 중 []있음 (상실신고일:)
따른 상속권 상실 ※ 향후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연금 가입기간 []없음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외국 거주기간 []없음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 /)	② (/ /)	③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overline{m}$
 $\overline{m}^2$
 $\overline{m}^3$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본인은 유족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복합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 관하여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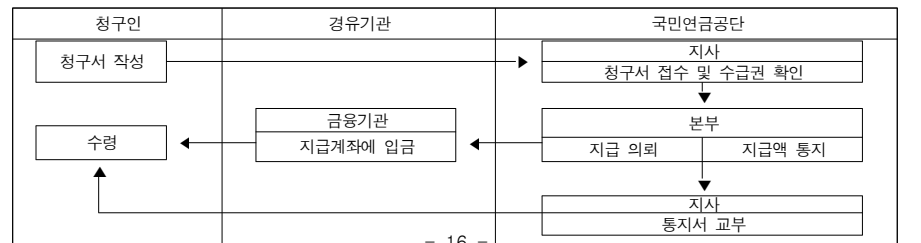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1부 6.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여부가 확인되는 재판서 1부(상속권 상실로 급여의 지급 제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로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내용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열람 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2. 수집·이용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존영구 - 보유근거: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 "로 표시된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용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용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임자 또는 가임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임자 또는 가임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임자 또는 가임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7.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진행 상황 포함)를 해당란에 "√" 표시를 하며, 상속권 상실 신고가 있는 경우 상실 신고일을 적습니다. * 유족연금등이 지급된 후 민법상 상속권 상실한 경우, 기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외국연금에 가입하여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청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9.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10.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약료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할 수 있습니다.
12.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미지급 급여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단독 ☐ 동순위자(명)		대표자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급여액 결정· 변경내역 수신 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임금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급여 내역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지급 기간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개월) 년 월 ~ 년 월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없음 []소송 중 []있음 (상실신고일:)
※ 향후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
 5월
 15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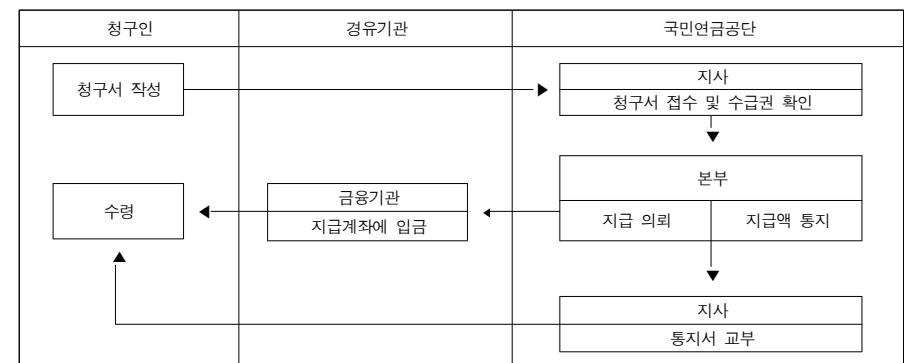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바자금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여부가 확인되는 재판서 1부(상속권 상실로 급여의 지급 제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표시를 합니다.
 -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진행 상황 포함)를 해당란에 “√” 표시를 하며, 상속권 상실 신고가 있는 경우 **상실 신고일**을 적습니다. * 유족연금등이 지급된 후 민법상 상속권 상실한 경우, 기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쪽)

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재지급신청 시)
지급계좌

신청내역

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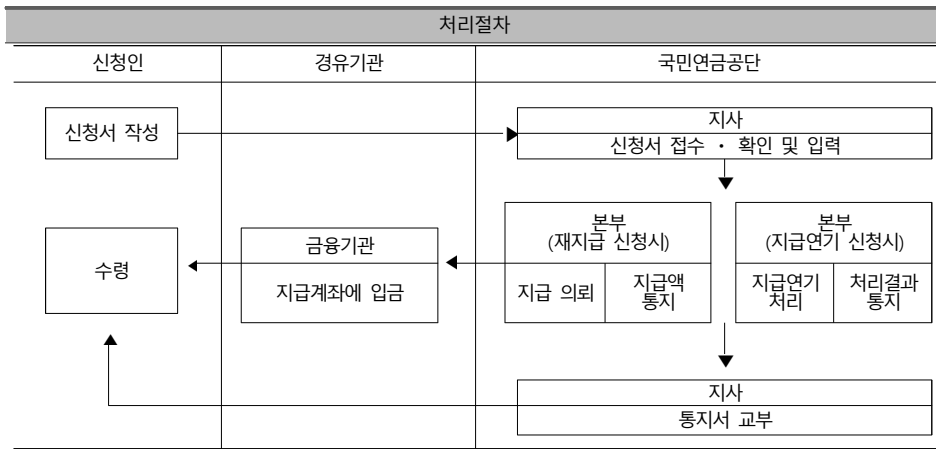
이름: _____ 나이: _____ 성별: _____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 수수료
-
- 없음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		
급여액 결정 · 변경내역 수신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재지급신청 시)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 (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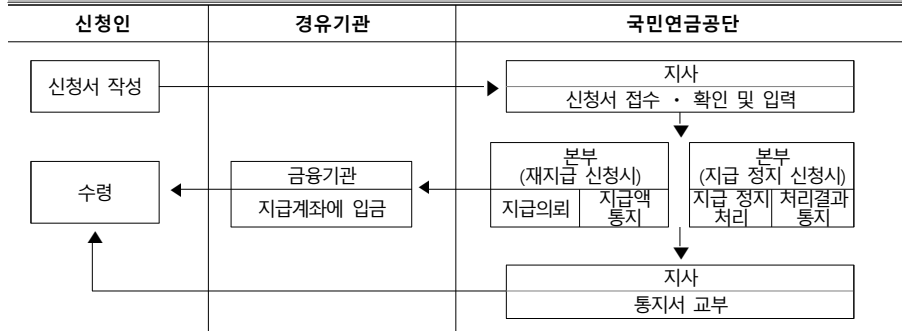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이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장애연금액 변경 사유	☐ 장애의 중복 ☐ 장애의 악화 ☐ 장애의 호전		
	구체적 사유: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제3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 합의 [] 미합의	[] 수령(원) [] 미수령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의료급여 · 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급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질병 · 부상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급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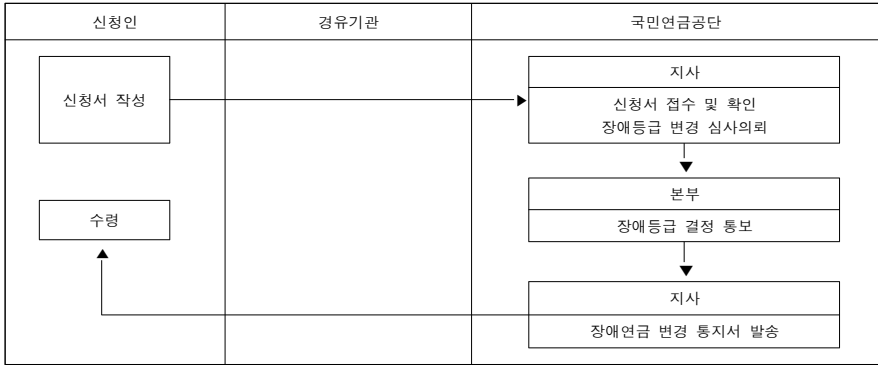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내용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열람 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2. 수집·이용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심사자료 열람(활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2.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공통	1.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보유근거: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 칸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장애연금액 변경 사유"칸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유를 선택하여 []에 “√”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칸에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대리인"칸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 정지 기간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해제사유발생일	년 월 일		
신청 사유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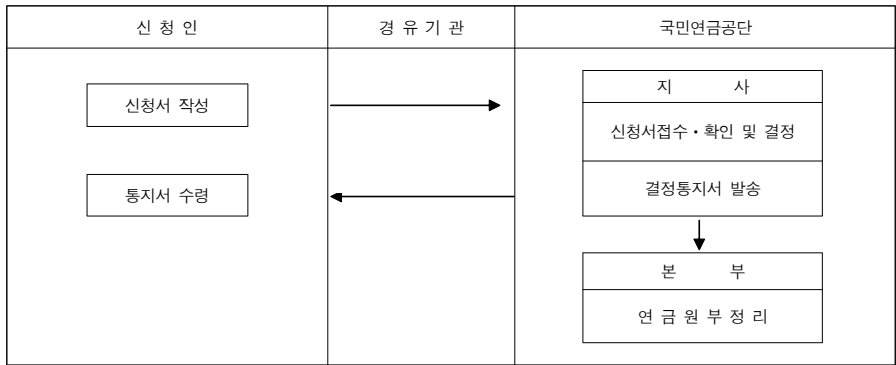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신청사유"란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합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자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2. 13.>

수급권 소멸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멸사유	급여 종별	소멸사유 발생일	
	[] 사망 [] 사망추정 [] 재혼 [] 임망 → 파양[] 19세 도달(손자녀) [] 25세 도달(자녀) [] 장애 미해당 [] 태아 출생 [] 기타()		
사망추정 경 위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소멸자와의 관계
	주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신고인 확인	(인)	기관장 확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급여 종별"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습니다.
- "소멸사유 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의 발생일로서 사망일, 사망추정일, 재혼일, **임양양** 등을 적습니다.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합니다.
-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신고서 접수·확인 및 입력 처 리 기 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연 금 원 부 정 리 처 리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정지대상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단독 [] 동순위자(명)	대표자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이 소멸(정지) 되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해당 미지급급여	[] 미해당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멸 (정지)사유			소멸(정지)일			변경사유 발생일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①								
	②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 /)	② (/ /)	③ (/ /)	선택급여 (발생일)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사망 진단서, 소제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료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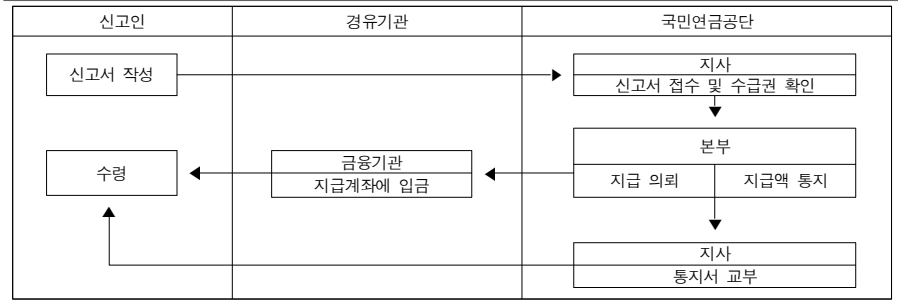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위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2. 13.>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단독 [] 동순위자(명)	대표자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 방법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전자우편(e-mail) [] 우편
-------------------	---

가입자(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250만원 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유	※ 지급사유발생일	※ 장애표시	[] 해당 [] 미해당	※ 미지급급여	[] 해당 [] 미해당
--------	-----------	--------	-------------------	---------	-------------------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장애 표시
	①					
	②					

민법제1003조에 따른 상속권 상실	[] 없음 [] 소속 중 [] 있음 (상실신고일:) ※ 향후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 /)	② (/ /)	③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청구서 확인사항

- 본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60세 도달)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공적연금 연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출산(임양) 또는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반환할사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사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의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여부가 확인되는 재판서 1부(상속권 상실로 급여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로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1.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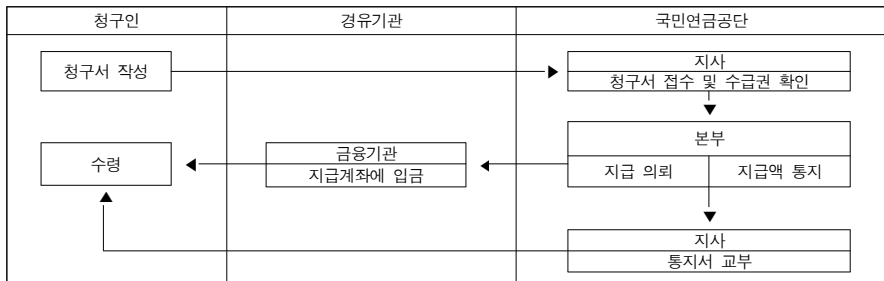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 칸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칸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에 "√"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 거부 등 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칸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진행 상황 포함)를 해당란에 "√" 표시를 하며, 상속권 상실 신고가 있는 경우 상실 신고일을 적습니다. * 유족연금등이 지급된 후 민법상 상속권 상실한 경우, 기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인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국민연금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	진료기관 명칭	소재지	기간	진단명				
	초진:							
	최종: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	질병, 부상의 경우	발생일		발생장소				
	사망의 경우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인 질병, 부상		초진일				
	경위:							
제3자 가해	가해자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인	합의사항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습니다**.
-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은 사실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빠짐없이 적으시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적습니다**
- "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란 : 기재란 부족 시 다른 용지 사용 가능
 - 장애발생(또는 사망)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빠짐없이 적으시고, "초진일"은 장애(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다만, 장애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가해"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자"란은 그 대표를 기재하되,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명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는 "가해자"란을 비워두되,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습니다**.
 - "합의사항"란은 민·형사상 합의유무, 합의금액 및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신고서 작성	→	지 사 신고서 접수·확인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종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유족연금		
소득내역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작일	년	월 일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중단일	년	월 일
	종사업종	[]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 ※ (세부사항 기재) 사 업 장 명 칭 : 업 태 : 사업자등록번호 :	
	월평균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금액} / 당해 연도 총사월수]	원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수급권자 내용변경 등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종류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특례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	--

수급권자 내용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내용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사유발생일 (YYYY.MM.DD)	변 경 내 용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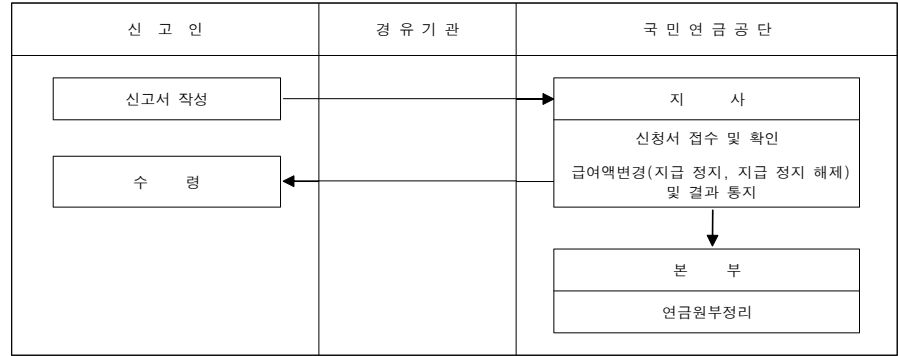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규정 서식) 등 나.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등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작일"란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중단일"란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을 적습니다.
- "종사업종"란은 구체적으로 적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만 적어도 됩니다.
- "월평균 소득금액"란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
자우편주소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변경항목”란은 “수급권자”란의 항목 중 변경되는 항목(예: 성명, 주소)을 기재합니다.
4.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변경일자”란은 변경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부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현	개 정 안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 ⑩ (생 략) ⑪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다 만,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 ----- ----- ----- ----- ----- 내용변경 등 ----- ----- ----- ----- ----- ----- -----.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단, 공단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같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